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2012. 8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 머 리 말

국내에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매일 700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위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적사고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가정을 보호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 ■ 목차

---

요 약 / 1

I. 서론 / 10

1. 연구목적 / 10
2. 선행연구 / 11
3. 연구범위와 방법 / 12

II.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현황 / 13

1. 인적사고의 발생현황 / 13
2.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 15
3. 산재사고의 보상제도 / 20
4. 자동차 등 사고 보상제도 / 25

III.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 33

1. 일시금지급의 문제점 / 33
2. 사고유자녀 현황 / 36
3.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 / 40

IV.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 / 47

1. 미국 / 47
2. 영국 / 58
3. 호주 / 61

V.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 / 66

1. 정기금지급 선호도 조사 / 66
2. 정기금 운영방식 / 70
3. 관련법규 검토 / 74

## ■ 목차

---

Ⅵ. 결론 / 79

| 참고문헌 | / 81

| 부록 | / 83

부록 I: 인적사고 의무보험제도 현황 / 83

부록 II: 사고유자녀 수 추정을 위한 자료 / 86

부록 III: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89

## ■ 표 차례

---

- 〈표 II-1〉 인적사고의 1일 평균 발생 추이 / 13
- 〈표 II-2〉 인적사고 원인별 사망, 부상자 수 추이 / 14
- 〈표 II-3〉 인적사고 손해배상금의 구성 / 16
- 〈표 II-4〉 인적사고의 보상대책 구분 / 19
- 〈표 II-5〉 특수불법행위 인적사고의 보험제도 운영현황 / 20
- 〈표 II-6〉 산재보험의 대표적인 급여범위 / 23
- 〈표 II-7〉 총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 추이 / 24
- 〈표 II-8〉 대인배상 보장내용 및 지급기준 / 27
- 〈표 II-9〉 보장사업 각출비 최대금액 / 28
- 〈표 II-10〉 자동차 인적사고의 지급방식 / 28
- 〈표 II-11〉 자동차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 추이 / 29
- 〈표 II-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내용 / 30
- 〈표 III-1〉 2009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실적 / 34
- 〈표 III-2〉 2009년 말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결과 / 39
- 〈표 III-3〉 2009년 교통사고 유자녀 발생 수 추정 결과 / 40
- 〈표 III-4〉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 42
- 〈표 III-5〉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지출 / 43
- 〈표 III-6〉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통 지출 / 44
- 〈표 III-7〉 사고유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필요 양육비 / 45
- 〈표 IV-1〉 미국의 정기금지급 채택 현황 / 51
- 〈표 V-1〉 일시금 vs. 정기금의 선호 비율 조사 결과 / 66
- 〈표 V-2〉 일시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 67
- 〈표 V-3〉 정기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 68
- 〈표 V-4〉 연령대별 정기금 선호 비율 / 68
- 〈표 V-5〉 연령별 · 결혼여부별 · 학력별 정기금 선호 비율 / 69
- 〈표 V-6〉 보험관련 세제 / 77

## ■ 그림 차례

---

〈그림 IV-1〉 미국의 배상책임 이전을 통한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 50

〈그림 IV-2〉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옵션 / 55

〈그림 IV-3〉 지급기간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옵션 / 56

〈그림 IV-4〉 미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연금 판매규모 / 57

〈그림 IV-5〉 호주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 63

## Structured payment of accident victim's benefit

In Korea, a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s available for most of accidents. For example, social risk management system is in operation as fire, auto and explosion insurance are mandatory and so is workers' compensation. In most cases, the benefits are paid in lump sum.

However, lump sum payment is not a suitable way to provide benefits, which may be spent out too early to cover the victim's living expenses or medical expenses. This may drive the victims into a financially distressed condition and social problems may entai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tructured settlement is used in more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many laws and tax regulations are designed to provide advantages for the structured settlement such as tax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even though the prevailing practice is the lump sum payment, periodically allocated payments or structured payments of benefits are also available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ivil Code Section 725). Moreover, General Provisions Article 15 (insurance billing and payment) of the standard auto insurance reads that structured payments are available if the victim wants to be paid so.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s to guide this procedure.

So,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structured payments are needed by adding terms to the legislation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structured payments mandatory for the victims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or elderly parents.

There are several ways to manage the structured payment system. In this study, the pros and cons are analyzed for each method and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o use the reserve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 요약

### I. 서론

-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가족의 생계 및 자녀 교육이 곤란해지고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인적사고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지급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함.

### II.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체계 현황

#### 1. 인적사고의 발생현황

- 국내에서 재난사고는 하루 평균 747.3건 발생하며, 그로 인해 21.6명이 사망하고 95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인적사고의 원인으로는 도로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음.

#### 2.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체계

-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 가스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강제함.
-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 민법 제751조와 제725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기금배상이 가능하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정기금배상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민법상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 3. 산재사고의 보상제도

■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함.

- 이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일시금으로,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 가능함.
- 총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은 2010년 현재 기준으로 30% 이상으로 연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4. 자동차 등 사고 보상제도

■ 국내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과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보상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개호비에 대해서는 정기금

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실수익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전무한 실정임.

-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서 정기금지급에 관한 언급은 없음.

### Ⅲ.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 1. 일시금지급의 문제점

- 인적사고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피해자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자녀양육 및 교육 곤란, 부부관계문제, 가족갈등, 부모 부양문제, 가정폭력 등 가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
- 나아가 이와 같이 인적사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가정문제는 정부의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보상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경제적 빈곤은 유자녀의 교육 기회 박탈과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함께 범죄 등 사회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 사고유자녀 현황

-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는 특히 (미성년) 유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자녀 수를 추정함.
  -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3,283명의 교통사고 유자녀를 포함하여 전체 36,635명의 사고유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3.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

-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월 평균 828,261원, 가구당 총 양육비는 월 평균 1,507,396원으로 산출됨.
  - 특히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은 초등학생은 38.7%, 중학생은 38.3%, 고등학생은 42.3%로 나타남.
- 앞서 추정한 유자녀 수와 1인당 총 양육비를 바탕으로 사고유자녀 양육비를 산출할 경우 한 자녀 가구의 경우 연 1,141만 원,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연 1,930만 원, 세 자녀 가구의 경우 연 2,29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자 26세부터 40세까지의 평균보험금 1억 7,700만 원은 자녀의 총 양육비에는 부족하지만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

## IV.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

### 1. 미국

- 미국의 구조화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 형태로 받도록 보상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생명보험회사나 수탁회사에 배상책임이 이전하여 정기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이는 일시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안정된 흐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 가능함.
  - 또한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음.
  
- 1982년 정기금지급세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Tax Act)을 통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이후 활성화됨.
  - 뉴욕 주를 비롯한 21개 주에서 정기금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됨.

### 2. 영국

- 영국 구조화지급방식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는 미국과 유사함.
  
- Finance Act 1995를 통해 구조화지급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Damages Act 1996을 통해 피해자의 연금수령권을 보호함.

- 2000년 기준으로 연간 200건 정도의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지며 평균규모는 약 50만 파운드에서 70만 파운드로 전체 시장규모는 연간 약 1억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로 추정됨.

### 3. 호주

- 호주 구조화지급방식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미국과 유사함.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54 제정을 통해 구조화지급 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단, 구조화지급방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함.

## V.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

### 1. 정기금지급 선호도 조사

- 20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일시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60.9%,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39.1%로 나타남.
- 일시금 선호 이유로는 투자용으로 사용 43.2%, 목돈마련 28.8%,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18.1%, 수령불편이 9.9%로 나타남.
  -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지급불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기금 선호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74%, 자녀교육비 마련 14.2%, 가족불화 우려가 7.8%, 갈취와 탕진 우려가 4.0%로 나타남.
  -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2. 정기금지급 운영방식

- 첫째,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 우리나라 제도와 현실을 고려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
  - 소비자 입장에서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음.
  -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를 통하여 신용리스크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급방법이나 적용이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의 보상업무가 늘어나고,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 단점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할 수 있고, 모집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현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세제적격 연금만을 취급할 수 있어 다양한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밖에 없어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셋째,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 다양한 지급조건을 설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의 부담도 덜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법임.
- 미국에서 주로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 또는 기타 수탁회사에게 배상의무를 전가하여 계약을 맺으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음.
- 한편 수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밖에 없어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음.
-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3. 관련법규 검토

### ■ 합의의 경우 현재 법규에서는 정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민법 제725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정기금 배상이 가능함.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5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할 경우 정기금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미성년 유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 문화가 아니므로 정기금지급이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정기금 운영방식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정기금을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함.
  -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함.
  - 미국의 경우 연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수급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비과세의 명분을 얻음.
  -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임.
  
- 또한 정기금 지급 시 적용이율과 이율적용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함.

## VI. 결론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경우 일시금지급으로 인한 보험금의 조기 소진 가능성을 줄여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와 사회적 문제 및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 I. 서론

---

## 1. 연구목적

국내에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매일 700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personal injury)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피해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다.

이때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가 되어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이 곤란해지며 나아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들어 산재보험의 연금보상금이 전체보상금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준사회보험 성격으로 도입된 각종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사고에 대해 준사회보험방식을 채용한 각종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가정의 보호 측면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산재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지급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적사고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정기금 또는 정기금과 일시금 혼합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정기금지급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연구는 송홍섭(1992), 전제중(1996), 김원태(2003), 최은순(2008), 남동현(2010)등에 의해 1990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금지급에 대한 국내외 학설, 판례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급방법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마승렬(2002, 2010)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시이율을 따르는 변동금리형 즉시연금의 금전적 가치(money's worth)를 공시이율의 확률과정과 무위험증권의 만기수익률 모형을 설정하여 시물레이션을 통해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시금지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기금지급방안 및 이에 따르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 연구에서 주장하는 정기금은 확정된 손실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뿐만이 아닌, 피해자 장애정도의 변화나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고당시 손해를 확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정기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나라의 판례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잔존여명이 불확실한 경우의 일실수입 등 불확정적 손해에 대한 정기금지급만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사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정된 손해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만을 다루도록 한다.

참고로 외국의 정기금형태 손해배상제도는 크게 일시금의 분할지급 형태인 structured settlement와 배상의 범위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포괄하는 indemnity settlement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영미국가에서, 후자는 주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제3자 인적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적사고 발생현황과 인적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 사고유자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여 현재 국내 인적사고 보상금 지급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을 도입배경, 관련법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살펴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먼저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기금지급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정기금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금지급 관련법규 및 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II.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현황

### 1. 인적사고의 발생현황

사람들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인적사고(personal injury accident)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 중 자신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지만,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적사고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발생빈도(frequency)는 증가하지만 사고의 심도(severity)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인적사고의 1일 평균 발생 추이

(단위: 건,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CAGR
사고 수	704.9	704.1	745.5	759.7	800.8	768.8	747.3	1.8
사망자수	22.7	21.9	21.5	20.3	19.9	18.5	21.6	-4.0
부상자수	956.3	957.7	941.9	954.6	1,012.5	985.9	952.6	0.6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연도.

먼저 사고발생빈도를 1일 평균사고건수로 보면 747.3건이 발생하며 매년 1.8%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적사고의 심도는 1일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로 나누어 볼 경우 1일 평균 21.6명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95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사고심도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4.0%씩 감소하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0.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인적사고의 발생원인별 분포를 보면 자동차 등의 도로교통상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79%인 6,019명이 도로교통사고로, 426명이 화재로, 24명이 붕괴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매년 35만 3,371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7%가 도로교통사고에 기인하고 있다.

〈표 II-2〉 인적사고 원인별 사망, 부상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0	평균	CAGR	
사망 사고	합 계	8,294	7,849	7,257	6,758	7,597	-4.0
	화재	505	424	409	304	426	-9.7
	산 불	10	9	5	2	6	-27.5
	붕 괴	27	29	29	19	24	-6.8
	폭 발	12	9	6	1	7	-39.2
	도로교통	6,376	6,166	5,870	5,505	6,019	-2.9
	해 난	52	70	97	85	68	10.3
	기 타*	1,312	1,142	841	841	1,047	-8.5
부상 사고	합 계	349,038	343,808	369,578	359,840	353,371	0.6
	화재	1,837	2,035	2,032	1,588	1,912	-2.9
	붕 괴	75	81	114	143	85	13.8
	폭 발	92	157	67	64	109	-7.0
	도로교통	342,233	335,906	338,962	352,458	341,458	0.6
	해 난	168	0	0	68	48	-16.5
	기 타*	4,633	5,609	28,399	5,519	9,752	3.6

주: 기타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고원인이 포함된 것이며, 2010년 사망의 경우 철도 135명, 수난 360명, 추락 104명, 등산 88명, 농기계 60명, 전기 47명, 가스 10명, 공단 내 시설 및 승강기 각각 10명, 광산 7명, 자전거 6명, 레저 3명, 유도선 및 항공기 각각 1명임.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연도.

## 2.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 가. 손해배상의 범위

인적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고를 야기한 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실보상책임<sup>1)</sup>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원이 상실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인적사고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자신의 귀책사유인 것은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리스크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전적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750조이다. 동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인적사고의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63조에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

1) 손해배상(damages)과 손실보상(loss compensation)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은 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나 신체상해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의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며 민법상의 관련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체(harm, injury, loss)와는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침범했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개별 적법행위를 규정하는 법규가 별도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에 해당된다.

한다.2)”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이 인정되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손해(pecuniary or economic damages)와 비경제적 손해(non economic damages)로 구분한다.3) 경제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재산손해와 소극적 재산손해로 분류되는데 적극적 재산손해에는 치료비, 장례관련비와 기타비용이 포함되며, 소극적 재산손해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으로 구성된다.

〈표 II-3〉 인적사고 손해배상금의 구성

중구분	세부구분	해당비용	사고 구분		
			부상	후유장해	사망
경제적 손해 (재산 손해)	적극적 재산손해	치료관련비	○	○	-
		장례관련비	-	-	○
		기타비용	○	○	○
	소극적 재산손해	휴업손해	○	-	-
		상실수익	-	○	○
비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	○	○

- 2) 민법 제760조는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를 준용하고 있다.
- 3) 외국사법제도연구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상액 산정」, 법원행정처, p. 34 참조. 국내의 손해배상은 미국의 전보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된다.

미국의 손해배상 범위

손해구분	불법행위	손해발생	비고
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ble damage)	과실	발생	경제적 손해, 비경제적 손해
명목적 손해배상 (nominal damage)	과실	미발생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고의, 중과실	발생	-

여기서 사망자의 상실수익이란 사망자가 생존하였다면 장래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한다. 상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통상 사망자의 월(또는 년) 순수입으로부터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추정취업가능월수(또는 년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나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후유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은 사고로 부상한 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고 전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사망 상실수익과 후유장해 상실수익의 계산방법은 비슷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생활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점 등이 사망의 경우와 다르다. 호프만식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 라이프니쯔식에 비하여 중간이자공제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은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 나.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민법상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하고, 특수한 불법행위의 경우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채무(periodic payment)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기금배상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정기금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

은 물론이다(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판결에서는 일시금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sup>4)</sup>

판례 중에는 상실수익의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 그러나 간병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결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기금과 일시금이 논란이 되는 재판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및 여명예측이 불명확한 경우 상실수익의 생활비 공제에 관한 분쟁이다. 이때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원할 때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자료나 확정할 수 있는 일실손해 항목은 민법상의 근거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무 관행은 일시금지급으로 굳어져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267B 판결은 “전문 감정인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며, (중략) 특히, 이와 같이 혼용하여 일실손해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4) 최은순(2008),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31집, p. 461.

### 다. 손해배상대책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리스크는 일반 재물손해리스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피보험이익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위한 것(the third party risk)임에 비해 재물손해리스크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손해액의 확정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수나 배상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사고시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손해는 사고 전에도 최대로 발생 가능한 손해규모를 예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등을 신속하게 배상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에 대해 보상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를 적용하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고 기타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가정용LPG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도 과실책임을 적용하지만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하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있다.

〈표 II-4〉 인적사고의 보상대책 구분

구분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책임
	일반불법	특수불법	국가배상	
적용법규	민법	개별법규	국가배상법	개별법
적용법리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손해대책	없음/의무	의무	없음	의무
예시제도	수련시설	자동차, 화재, LPG(가정용)	-	근재, 산업재해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 가스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불법행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불법행위는 피해자 1인당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한도를 규정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과실책임에 의해 받아야 한다. 국내 인적사고의 80% 이상인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시 1억 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부상을 당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을 의무보험제도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표 II-5〉 특수불법행위 인적사고의 보험제도 운영현황

구분	근거법률	가입자	보장내용	배상액	시행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운행으 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후유 장해 1억, 부상 2,500만	'63.4.4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5	특수 건물 소유자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후유 장해 0.8억, 부상 1,500만	'73.2.6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43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25 규칙§53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33	가스사 업자 및 특정가 스시설 사용자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사망·후유 장해 0.8억, 부상 1,500만	'84.7.1

### 3. 산재사고의 보상제도

#### 가. 손실보상범위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보험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만 적용하다 점진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제공한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기타 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medical benefit)는 피재근로자의 요양이 4일<sup>5)</sup> 이상인 경우에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지출된 요양비 전액을 현물로 지급한다. 즉, 요양급여는 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보상받게 되며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公私)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자기부담금(coinsurance, deductible)제도는 없다. 2010년 현재 요양급여환자는 40,259명(입원 12,340명, 통원 27,829명)이며 요양급여액은 7,665억 원에 이른다.

휴업급여(disability income benefit)는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 1일당 평균임금<sup>6)</sup>의 70%를 보상해주고 있다. 2010년도의 휴업급여 수급자는 121,836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급여액은 7,531억 원이다. 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받았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14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장애보상금(disability benefit)으로 지급한다. 장애보상급여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의 경우 장애등급 제14급은 평균임금의 55일을 지급하고 제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을 지급한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제7급은 평균임금의 138일분, 제1급은 329일분을 지급한다. 2010년 현재 장애보상금은 1조 3,97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일시금은 5,535억 원이고 나머지가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5)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치료기간이 3일 이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 93.

6)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진폐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환으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급연금액은 진폐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sup>7)</sup> 또한 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1일당 정액(상시간병 38,240원, 수시간병 24,490원)을 간병비(medicare benefit)로 지급한다.

피재근로자가 피재 이후 2년 동안 요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medical compensation annuity)을 지급한다. 2010년 현재 6,451명의 수급자가 있고 연금 지급액은 1,829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요양근로자에 대해 직업재활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장해 1-3급인 경우 지급 1,000일분)를 지급한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한다. 2010년의 유족급여는 18,130명에 대해 3,521억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해주는 급부이다. 따라서 유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이 직접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 간 임금수준의 차이로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와 최저금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2010년 지급금액은 225억 원이다.

7) 1급, 3급은 평균임금의 132일분, 5급, 7급은 72일분, 9급, 11급, 13급은 24일분을 지급한다.

〈표 II-6〉 산재보험의 대표적인 급여범위

구분	급여 종류	산재보험	근재보험
부상 질병	요양급여	요양비(치료비) 전액	좌동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급~3급 해당자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일시 보상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해도 완치 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1급~14급: 평균임금의 1,474 일분~55일분 단, 1급~7급: 연금지급 가능	1급-14급: 평균임금의 1,340 일분-50일분 연금지급 없음
	간병급여	치유 후 1,2급 후유장애 -상시간병: 1일 38,240원 -수시간병: 1일 25,490원	-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지급가능	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평균임금의 90일분

주: 진폐, 특별급여는 제외되었음.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포기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자료: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근재보험약관.

## 나. 손실보상방법

산재보험은 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보상금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만 가능하고 기타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각 급부별로 연금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에 의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급여기초연금액(평균임금의 365일)의 47%에 대하여 연금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즉, 연금수급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급여기초연금액의 47%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수급권자를 1인 추가할 때마다 가산금액과 급여기초연금액을 5%p씩 증가시켜 연금액을 계산하고 수급자는 최대 4인으로 제한한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보면 2000년까지는 10%를 넘지 않았으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확보 필요성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로 산재보험 전체급여액 3조 5,237억 원 중에서 30.9%인 1조 882억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3.2%p 증가한 규모이다.

〈표 II-7〉 총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총 급여	5,394	11,336	14,563	30,258	32,423	34,219	34,631	35,237	
장해 급여	일시금	1,174	2,542	2,237	5,058	5,033	5,433	5,429	5,535
	연금	90	415	1,367	4,164	6,674	7,226	7,482	8,443
유족 급여	일시금	692	1,596	1,531	1,163	1,194	1,245	1,141	1,082
	연금	3	13	62	1,043	1,774	1,932	2,185	2,439
연금 비중	1.7	3.8	9.8	17.2	26.1	26.8	27.9	30.9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8)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p. 93~115에서 정리하였다.

## 4. 자동차 등 사고 보상제도

### 가. 자동차사고

#### 1) 보상손해의 범위

국내 인적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사고가 차지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와 운전자 자신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가 리스크관리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제도이다. 즉, 자배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불특정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자배법 제3조 및 제5조). 임의보험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피해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여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인적사고 즉 손해배상책임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제3자가 소득보전대책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알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사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손해배상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500만 원의 부상보험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상을 치료한 뒤에 휴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휴유장해등급에 따라 최고 1억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는 사망, 부상, 휴유장해별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는 “장래

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구조수색비”로 구성되어 있고,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기타손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유장해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보험금지급항목 이외에도 비용이 있는데 주로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등과 같은 것으로, 실제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사망자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총 4,500만 원, 그 외의 연령인 경우 총 4,000만 원이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후유장해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여 사망 시 위자료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예를 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50%인 경우이면서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4,500만 원의 기본 위자료에 장해율 및 7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상의 경우 적극손해항목인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가 지급되고,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개호는 치료 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것도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피해자의 경우 이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장래에 필요한 간병인을 특별히 개호인이라 부르며 그 업무내용을 개호라 한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을 앞서 설명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표 II-8〉 대인배상 보장내용 및 지급기준

보장내용		지급기준	
사 망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 원 (2) 사망자 연령 20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 원	
	상실 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즈계수	
부 상	적극손해	가. 구조비: 실비 나. 치료관계비: 입원비, 응급치료, 치아보철비 등 비용	
	위자료	등급별로 200만 원(1급) ~ 15만 원(14급)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기타손해 배상금	적극손해, 위자료 및 휴업손해 이외의 손해배상금액(입원: 1 일 13,110원, 통원: 1일 8,000원)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자 연령을 감안하여 지급	
	상실 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즈계수	
	개호비	1일 1인으로 한하여 일용노동자 임금(일시금 또는 퇴원일 부터 향후 생존기간까지 매월 정기금)	
비 용	대인배상 I	손해방지 · 경감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대인배상 II	손해방지 ·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합의 · 절충비용, 소송 · 화해 · 중재비용 등	

주: 본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둘째, 뺑소니차 및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책임보험료의 5% 이내를 소유자로부터 각출하는데 2009년의 경우 최대 1,618억 원이 된다(자배법 시행령 제31조). 동 사업은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자배법 제5장). 또한 동 보장사업과 더불어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의 유자녀나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자배법 제30조).

〈표 II-9〉 보장사업 각출비 최대금액

(단위: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인배상 I 보험료	28,521	29,506	31,856	65,112	33,781	32,356
보장비용	1,426	1,475	1,593	3,256	1,689	1,618

## 2)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식

### 가) 대인배상보험금

자동차사고의 인적보험금에 대한 지급방식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험약관에는 규정되어 있다. 먼저 자배법상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제724조)과 자배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10〉 자동차 인적사고의 지급방식

구분	담보별	손해보상 여부		보험금 등 지급방식
		소유자	피해자	
보험 제도	대인배상 I · II	×	○	일시금
	자기신체	○	×	
	무보험차상해	○	×	
보장 사업	대인배상 I	×	○	정기금
	지원사업	○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⑦에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정기금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와 간호비에 대해서는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상실수익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전무한 실정이다. 2009년도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전체 자동차사고보험금의 30%인 2조 3,000억 원의 규모인데 전부가 일시금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II-11〉 자동차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 추이

(단위: 억 원, 만 건, %)

구분	자동차 전체 실적			대인배상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점유비
2004	81,038	331.7	56,086	28,521	72.2	20,381	36.3
2005	83,422	374.4	62,368	29,506	81.4	22,996	36.9
2006	91,698	404.8	67,195	31,856	86.9	24,197	36.0
2007	103,109	432.5	70,840	65,112	92.3	24,573	34.7
2008	104,134	446.4	72,786	33,781	93.1	23,810	32.7
2009	106,815	508.2	79,685	32,356	101.4	23,769	29.8

자료: 보험개발원(2011),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p. 288, p. 302.

###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손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교통사고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sup>9)</sup>이다. 동 사업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소득(1인 가구 553,354원)과 건강보험료(직장 1인 가구 16,047원)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로 월 최대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중증후유장애자의 경우는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월 20만 원 지원해주며 장학금으로 초·중·고 각각 분기당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자립지원금으로 월 4만 5천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부양노부모에게는 무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표 II-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중증후유장애자	재활보조금(무상)	월 20만 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 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 원
		중학생	분기 20만 원
		고등학생	분기 30만 원
	자립지원금	월 4만 5천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0만 원	

자료: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safety/accident/support\\_01.jsp](http://www.ts2020.kr/safety/accident/support_01.jsp)).

9) 피부양노부모는 다음 가), 나)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나. 화재사고 등 보상제도

### 1) 화재사고

화재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에도 불특정 제3자의 사망과 부상 피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화보법 제4조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보법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 원(다만, 실손해액<sup>10</sup>)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보법 제8조(보험금 지급)에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기금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험가입은 주로 화재보험에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를 통해 하는데 동 특약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폭발사고 보상제도

가스폭발, 인화물질폭발 등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인적 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폭발사고가 불특정 제3자에게 가장 많은 손

10) 화보법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는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납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을 주기 때문에 관련법규(〈표 II-5〉 참조)에서 손해배상책임자를 규정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해야할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자, 충전자, 사용자, 판매자이며, 손해배상책임부담액은 사망의 경우 8,000만 원(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 원(1급)에서 최저 20만 원(14급)을 지급하며,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8,000만 원(1급), 최저 500만 원(14급)을 지급한다.<sup>11)</sup> 피해자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며, 보험금의 정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의무보험을 담보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의 한도액과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약관에서도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기금 지급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

---

## Ⅲ.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

### 1. 일시금지급의 문제점

#### 가. 보상금의 본래 기능 미흡

제3자 인적사고 보험금을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조사 결과, 교통사고 보험금의 주 사용용도로 전체의 41.5%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치료비 23.0%, 부채상환 18.2%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이 향후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생활자금과 치료비, 부채상환 등의 주 사용용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보상금 중 대부분이 이미 소진된 상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상금의 사용은 해외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일시금보상을 받은 자의 30%가 2개월 이내에 소진하고 5년이 지나면 받은 자의 90% 이상이 전부 소진(The Rutter Group, California Practice Guide: Personal Injury, 2006)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일시금보상을 받은 자의 75%가 6년 이내에 전부 소진하며(Bass 1983),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투자를 한 사람은 32%에 불과하고, 17%는 사치성물품을 구입하는 것(Neave&Howell 1992)으로 조사되는 등 일시금지급이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손해배상 수준과 방법으로는 보험 본래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조기 소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2009년 실적을 보더라도 III장 2절에서 추정된 교통사고 유자녀 수 33,283명의 17.9%에 달하는 5,948명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장학금 이외에도 생활자금대출 7,186명, 피부양보조금 1,311명 등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매우 낮고 지원액이 매우 적은 점과 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고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고 피해자 대다수의 경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 2009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계	재활 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피부양 보조금
인원	21,920	7,475	7,186	5,948	1,311
금액	34,398	12,464	14,995	4,861	2,078

자료: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 나. 가정파괴 현상 지속

교통안전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교통사고 유자녀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유자녀가구가 지니고 있는 가정 내 문제(복수응답)는 경제문제가 전체 가구의 9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89.0%, 가족의 건강문제 61.9%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유자녀가구는 주거관련문제 49.8%, 부부관계문제 42.8%, 가족 공동의 시간 부족 및 가족갈등 27.2%, 부모부양문제 20.2%,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6.1% 등의 순서로 가정 내 문제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내 문제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 이상이 높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통사고 유자녀가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정 내 문제는 부모의 교통사고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적사고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부관계문제, 부모부양문제, 가정폭력문제 등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다.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

위에서 살펴본 인적사고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가정문제는 정부의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다. 사고 가정에 대한 보험금의 부족 또는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피해 가정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지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박탈은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켜 이로 인한 정부의 복지예산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관리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343억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피해 가정의 빈곤화로 인한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라. 사회적 리스크 증가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해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해 유자녀 또한 성장과정 및 학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의 대부분은 부의 사망 또는 부의 중상으로 인해 유자녀의 모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 가구이며, 이는 유자녀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대부분은 조기 소진되어 유

자녀의 학업수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보상금의 조기 소진 및 이에 따르는 경제적 빈곤은 유자녀의 정상적인 발달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의 빈곤과 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박탈은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함께 범죄 등 사회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사고유자녀 현황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든 유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미성년)유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몇 명 정도의 유자녀가 있으며 한 해 어느 정도의 유자녀가 발생하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고유자녀와 관련된 모든 논의의 기반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하고, 전체 사고에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사고유자녀를 추정하고자 한다.

### 가. 교통사고 유자녀의 정의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 유자녀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를 말한다. 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와 초등학교 재학 시기(6세부터 12세 미만까지)의 아동 그리고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12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인 미성년자 중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나.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방법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에 대한 자료와 모의 연령별 출산에 대한 자료 및 부와 모의 연령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계하였다.

1. 1992~2009년 각 연도의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로교통공단)
2.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사고 중 성별 · 연령별 사망자 수(보험개발원)
3. 1997~2009년 각 연도의 모(母)의 연령별 신생아 수(통계청)
4. 1992~2009년 각 연도의 성별 평균 초혼연령 자료(통계청)
5.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중증후유장애자(장해등급 1~5급) 수(보험개발원)

먼저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세 단위의 자료이므로 각 연령구간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구하고, 연도별 ·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성(性)비는 각 연도별 · 연령별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사망자의 성비와 같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 연령별 ·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구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연도의 모(母)의 연령별 신생아 수 자료가 5세 단위 자료이므로 각 구간에 속하는 모의 연령에 해당하는 신생아 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 모연령별 평균 신생아 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 모연령별 각 연령의 평균 자녀 수를 구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성별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3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연도별 · 부연령별 각 연령의 평균 자녀 수는 부연령에 비해 3세가 적은 모연령에 해당하는 연도별 · 모연령별 각 연령의 평균 자녀 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러 위에서 구한 연도별·연령별·성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도별·부연령별 각 연령의 평균 자녀 수, 연도별·모연령별 각 연령의 평균 자녀 수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도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유자녀연령별 유자녀 수를 구하고, 이를 유자녀연령이 같은 경우끼리 합하여 연도별·유자녀연령별 유자녀 발생 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인한 유자녀 수에 사망자 수 대비 중증후유장해자 수의 비율인 0.15를 곱하여 부모의 중증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를 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고유자녀 수 추정 방법은 첫째로는 중증후유장해자를 후유장해자 중 장애등급 1-5급(평균 노동력 상실을 50% 이상)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들 중 노동능력이 있을 수 있고 6급 이하의 장애자도 노동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령별 후유장해 발생자 수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연령별 후유장해 발생 수는 연령별 사망자 수의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 점에서 연령별 후유장해자 수의 추정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각 연도의 모 연령별 출생자 수 자료와 성별 평균 초혼연령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율의 감소와 출산연령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하였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성별·연령별 사망자 수 자료를 이용하여 부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와 모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를 따로 산출한 점에서 기존의 방법들과는 차별되는 장점을 가진 방법이다.

#### 다.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결과

위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만 3,283명(〈표 Ⅲ-2〉 참조)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2〉 2009년 말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결과

(단위: 명)

유자녀 연령	부사망	부중상	모사망	모중상	계
1	61	9	15	2	88
2	127	19	33	5	184
3	204	31	55	8	297
4	252	38	66	10	366
5	316	47	80	12	455
6	422	63	107	16	608
7	534	80	137	20	771
8	634	95	162	24	915
9	841	126	218	33	1,218
10	1,154	173	305	46	1,678
11	1,299	195	341	51	1,887
12	1,542	231	405	61	2,240
13	1,899	285	503	75	2,762
14	2,223	333	592	89	3,237
15	2,476	371	665	100	3,612
16	2,714	407	734	110	3,966
17	2,947	442	804	121	4,313
18	3,195	479	881	132	4,687
합계	22,840	3,426	6,102	915	33,283

또한 이 추정에 의하면 부(父)의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가 모(母)의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의 3.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유자녀들이 주 소득원인 가장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해 보면 2009년에 2,057명(〈표 Ⅲ-3〉 참조) 정도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연령이 낮은 유자녀 수가 연령이 높은 유자녀 수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출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 2009년 교통사고 유자녀 발생 수 추정 결과

(단위: 명)

연령	1	2	3	4	5	6	7	8	9	10
유자녀 수	87	90	94	85	82	88	90	92	104	120
연령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유자녀 수	117	122	134	140	146	152	157	159	2,057	

## 라. 전체 사고유자녀 수 추정 결과

이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결과와 전체 사고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하고 전체 사고부상자의 97%가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말 현재 총 36,635명의 사고유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

사고유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연령별 자녀 양육비 추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발행한 신운정·김지연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추계한 자녀 양육비용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위의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자녀양육비를 부부가 사는데 드는 비용과 자녀가 늘어남에 따라 드는 한계비용의 차이로 계산하는 한계비용 추계방법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두당 비용 접근법,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미국 USDA 추계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지출항목별 추계방법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별 추계방법의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가. 자녀 양육비 추정 방법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지출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는 2009년도 가계 동향 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성인지출항목, 자녀지출항목, 공동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성인지출항목을 제외하고 자녀지출항목과 공동지출항목을 자녀에 대한 지출로 간주하고 자녀지출항목을 자녀 수로 나누고 공동지출항목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성인지출항목은 주류 및 담배, 성인학원교육비, 평생교육비, 유흥비로, 자녀지출항목은 분유, 이유식, 교복, 아동용외의, 아동용내의, 아동화, 유아용 학습교재, 초등학생 학습교재, 중고생 교재, 중고생 참고서, 초등교육비(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비(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육비, 보습교육비(성인 미포함), 학교보충교육비, 국내교육연수비, 보육료 등으로 간주하였다. 성인지출항목과 자녀지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은 공동지출항목으로 보았다.

## 나.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는 한 자녀 가구의 경우 950,677원, 두 자녀 가구의 경우 804,092원, 세 자녀 가구의 경우 635,974원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자녀 1인당 총양육비는 평균 828,261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구당 총 양육비는 평균 1,507,396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Ⅲ-4〉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단위: 원, 명)

첫째아이의 교육상태	자녀 수별 양육비			평균 양육비	
	한 자녀	두 자녀 (1인당)	세 자녀 (1인당)	자녀 1인당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
취학 전 (유치원 포함)	848,895	678,968	572,857	754,601	1,193,976 (1.58)
초등학교 재학	975,203	762,543	633,847	775,534	1,552,161 (2.00)
중학교 재학	1,059,950	827,542	682,410	836,821	1,691,133 (2.02)
고등학교 재학	1,158,209	922,869	603,479	965,027	1,741,669 (1.80)
대학교 재학	957,563	859,855	694,218	885,900	1,498,448 (1.69)
평균	950,677	804,092	635,974	828,261	1,507,396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함.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 추계액과 가구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 추계액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다. 따라서 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가정에서 가장 높은 비용 지출 추계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38.7%, 중학생인 경우 38.3% 고등학생인 경우는 42.3%로 전체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지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 수별 양육비			평균 양육비	
	한 자녀	두 자녀 (1인당)	세 자녀 (1인당)	자녀 1인당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
취학 전 (유치원 포함)	221,967	229,573	222,296	225,312	356,502 (1.58)
초등학교 재학	378,888	294,604	248,137	300,576	601,576 (2.00)
중학교 재학	377,211	323,091	258,919	320,594	647,889 (2.02)
고등학교 재학	491,331	390,090	247,521	408,565	737,373 (1.80)
대학교 재학	299,726	325,000	238,563	310,762	525,636 (1.69)
평균	313,083	311,251	245,084	305,079	555,230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함.

가구 공동비용에 있어서는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자녀 1인당 비용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부분 1인당 평균적으로 약 50만 원 내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공동비용은 교육비용을 제외한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녀양육비 중 교육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액수를 지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Ⅲ-6〉 월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동 지출

(단위: 원, 명)

첫째아이의 교육상태	자녀 수별 양육비			평균 양육비	
	한 자녀	두 자녀 (1인당)	세 자녀 (1인당)	자녀 1인당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
취학 전 (유치원 포함)	626,928	449,395	350,562	529,289	837,474 (1.58)
초등학교 재학	596,315	468,329	386,261	475,592	951,855 (2.00)
중학교 재학	682,739	504,805	427,109	517,729	1,046,279 (2.02)
고등학교 재학	666,878	531,634	360,044	557,122	1,005,487 (1.80)
대학교 재학	657,837	531,761	448,477	575,906	974,111 (1.69)
평균	637,594	491,774	390,891	523,253	952,296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함.

#### 다.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

먼저 사고유자녀 양육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추정 유자녀 수가 36,635명이고 월 평균 한 자녀 당 양육비가 83만 원 정도이므로, 2009년 기준 연 3,650억 정도에 이른다.

이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의 경우는 연 1,141만 원, 두 자녀 가구의 경우는 연 1,930만 원, 세 자녀 가구의 경우는 연 2,290만 원의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은 인적사고 가정의 첫째아이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의 지불해야 하는 가구당 총 양육비를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자녀의 나이가 1세인 한자녀 가구의 경우 약 2억 1,100만 원, 유자녀의 나이가 6세인 한자녀 가구의 경우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필요하다. 또한 두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10세인 경우 약 1억 8,100만 원, 세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첫째아이가 10세인

경우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필요하다.

〈표 Ⅲ-7〉 사고유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필요 양육비 (단위: 억 원)

사고유자녀 연령 (첫째아의 연령)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가구
1	2.11	-	-
2	2.01	3.17	-
3	1.91	3.01	3.68
4	1.81	2.85	3.47
5	1.70	2.68	3.27
6	1.60	2.52	3.06
7	1.50	2.36	2.86
8	1.38	2.18	2.63
9	1.27	1.99	2.40
10	1.15	1.81	2.17
11	1.03	1.63	1.94
12	0.92	1.44	1.71
13	0.80	1.26	1.49
14	0.67	1.06	1.24
15	0.54	0.86	1.00
16	0.42	0.66	0.75
17	0.28	0.44	0.50
18	0.14	0.22	0.25

반면 2009년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자료에 의하면 유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남자 26세부터 50세까지의 경우 평균보험금이 1억 6,100만 원,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남자 26세부터 40세까지의 경우 평균보험금이 1억 7,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자녀가 아주 어리거나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총 양육비 보다 적어 충분한 보험금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양육비는 부모의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의 향후 생계비 보다 적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급보험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가는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전개하지 않겠다.

다만,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40% 정도인 점, 매해 발생하는 유자녀의 75% 정도가 초등학생 이상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보상금으로도 유자녀의 교육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IV.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

---

### 1. 미국

#### 가. 도입배경

미국 민법(civil law)상의 손해배상은 일시금 형태로 인정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정기금 형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시금배상은 불확실한 많은 요소에 기초하여 과소 또는 과대 배상의 위험이 있고, 과소배상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다시 사회 전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sup>12)</sup>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정기금지급 등의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 도입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 최초의 구조화지급방식은 1968년 미국 Thalidomide 수면제 제조업자인 Richardson-Merril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루어졌다.<sup>13)</sup> 원고는 임신 중 여성이 당사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정기금형태로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후 구조화지급방식은 중증 인적상해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비과세혜택의 조세조치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1982년 의회는 피해자가 일시금을 조기에 탕진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익을 증진

---

12) 외국사법제도연구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상액 산정』, 법원행정처, p. 69.

13) Jeremy Babener(2010),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s: Regulat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 History",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13(1), p. 18.

시키기 위해 정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세금보조를 받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1982년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에 따라 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구조화지급방식에 관련한 비과세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이 성장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정기금지급은 높은 신용등급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또는 정부채권을 구입하여 이루어지므로 지급불능리스크가 낮다. 둘째, 지급흐름을 총 지급규모 내에서 개인의 목적에 따라 기간과 규모를 설계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인플레이션 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셋째, 급여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일정기간 동안 보증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다. 넷째, 손해배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일관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의 약 90% 가량이 5년 이내에 탕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sup>14)</sup>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첫해에 약 70%를 탕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구조화지급방식은 연금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으로부터 격리(bankruptcy proof)” 될 수 있다.

## 나. 운영방법

정기금 운영방법으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정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양수인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정기금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

14) Jeremy Babener(2009),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6,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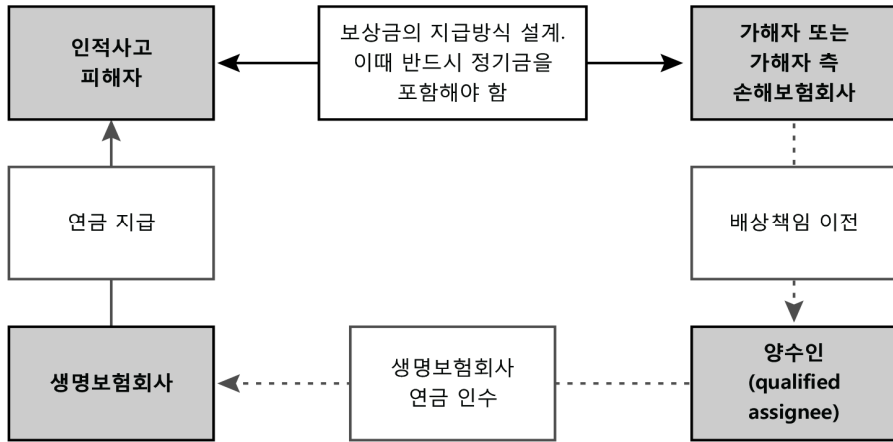
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신용도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정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모든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state)별로 보험보증기금이 있어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보증 한도가 있으며 주외거주자의 보험금은 보호하지 않아 보험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회계적인 이유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정기금지급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장기화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 현재 구조화지급방식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정기금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의 경우 1983년 이전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정기금지급을 위한 기금(funding asset)을 직접 소유하였으나, 1983년부터는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1982)과 세법 Sec.130에 의해 연금지급을 제3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사라지고, 가해자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8년 Tax Code는 구조화지급방식의 수취인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권을 갖도록 변경되었다.

물론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수탁사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수인의 신용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대개 신용도가 높은 생명보험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hell company)이며, 추가로 피해자에게 연금에 대한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주거나 양수인의 모회사인 생명보험회사가 보증(secondary guarantee)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때 생명보험회사의 특수목적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은 양수인이 자사의 연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IV-1〉 미국의 배상책임 이전을 통한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 다. 관련법규

미국에서 정기금제도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기금지급과 관련된 상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다.

### 1) 정기금지급대상

미국에서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기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기금제도는 1967년 메인 주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70년대에 뉴햄프셔,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소수의 주가 정기금제도를 채택했고, 대부분의 주가 80년 이후에 채택했다. 2003년 현재 정기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는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6개 주이고, 나머지 주는 정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1〉 미국의 정기금지급 채택 현황

(단위: 달러)

	정기금의 의무규정	정기금의 임의규정	정기금 규정 없음
치료비	루이지애나(50만), 미시간, 뉴욕(25만), 위스콘신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손해배상금	앨라배마(15만),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5만), 콜로라도(15만), 플로리다(20만), 일리노이(25만), 캔자스(50만), 메인(25만), 미주리(10만), 오하이오(20만), 노드아일랜드(15만), 사우스다코타(20만), 유타(10만), 워싱턴(10만), 위스콘신	아칸소(10만), 코네티컷,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10만), 몬테나(10만), 뉴햄프셔(5만),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의료과실), 사우스캐롤라이나(1만)	

주: ( )의 숫자는 초과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Anthony H. Riccardi and Thomas R. Ireland(2003), "A Primer on Annuity Contracts, Structured Settlements: Periodic Payment Judgement", *Journal of Legal Economics*, Winter 2002-2003, pp. 42~46에서 정리함.

정기금지급을 규정하는 방식은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강제화(mandatory)하거나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금지급 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는 뉴욕 주를 비롯한 20개 주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 주 등 12개 주이다. 강제화하고 있는 주의 내용을 보면 뉴욕 주의 경우 1985년에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정기금지급을 의무화했으며, 워싱턴 주는 1985년에 인적사고의 손해배상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정기금지급을 의무화했다.

## 2) 세법(Internal Revenue Code)

### (1) 정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인적사고에 대한 정기금지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은 1982년도에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정기금지급의 소득세제 적용과 관련한 Sec.104 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Sec.104(a)(2)는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징벌적보상 제외)을 소송(suit) 또는 합의(agreement)에 의해서 일시금 또는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다.

미국국세청(IRS)은 구조화지급방식과 관련된 Sec.104(a)(2)를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관련 통칙(Revenue Ruling 79-220, 79-313)을 제정했다. 이들 통칙은 인적상해에 대한 정기금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칙 79-220은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가치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의 명목가치 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해 구입한 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정기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된 일시금의 실질 혹은 미경과 수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 통칙 79-313은 매년 설정한 비율에 의해 상승하는 지급액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연간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이들 통칙의 핵심은 피해자(즉, 납세자)는 배상금의 현재가치의 실질 혹은 미경과 수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래지급에 대한 통제권 또는 보증된 수익을 갖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는 과세기준소득에 그러한 금액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수탁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Sec.104(a)(2)가 피해자보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면 Sec.130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수탁받은 기관을 고려하여 제정된 조항이다. Sec.130에 따르면 “조건부양도계약(qualified assignment)”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수탁자가 “조건부기금자산(qualified funding assets)”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수탁자(assignee)의 총소득에서 제외한다.<sup>15)</sup>

“조건부양도계약(qualified assignment)”은 개인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소송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법 하의 보상에 대해 정기금지급 손해배상책임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기금은 그 규모와 기간이 고정되며, 수령자에 의해 조기지급 또는 연기되거나, 증가·감소할 수 없다. 이때 수탁자의 채무는 이를 위탁한 가해자의 채무보다 크지 않다.

“조건부기금자산(qualified funding asset)”은 주법 하에 허가받은 생명보험 회사에 의한 연금계약이나 미국 국채(obligation of United State)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금계약 또는 국채는 조건부양도계약하에서 정기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자에 의해 사용된다. 그 정기금의 기간과 규모는 조건부양도계약을 따르며, 연금과 채권은 납세자에 의해 선정되고 조건부양도계약 전후 60일 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

15) 이때 소득은 “qualified funding assets”의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 대해서 비과세이므로, 만약 가해자가 100,000달러를 구조화지급방식회사에 지급하여 3,000달러를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97,000달러를 피해자를 위한 연금구입에 사용할 경우 3,000달러의 수수료만 과세대상이다.

## 라. 운영현황

### 1) 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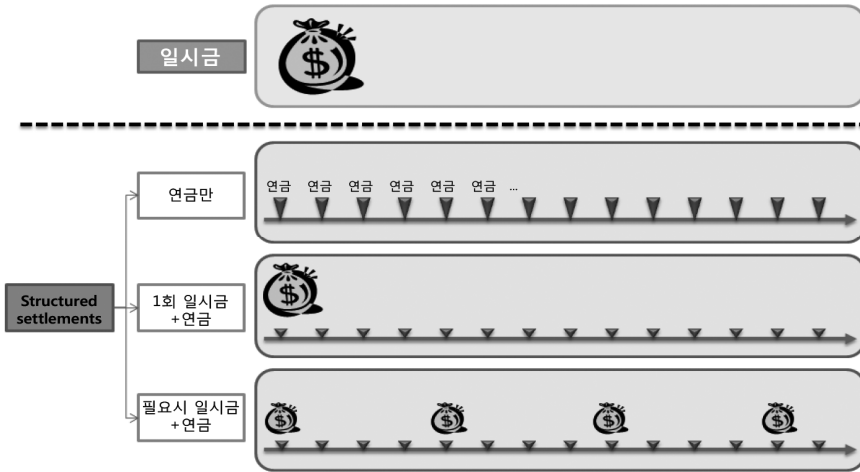
구조화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받도록 보상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화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소진을 막고 안정된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장기간의 의료간병이나 생활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유족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산정된 총 보상금액은 수령 형태와 기간 설정 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연금과 더불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일시금의 혼합 수령이 가능하다. 1회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일시금을 다양한 목적(생계유지비, 자녀교육비, 소비재구입, 저축, 채무청산 등)으로 사용하거나 은퇴시기에 맞춰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기(예, 5년마다 월체어 교체)에 맞추어 여러 번의 일시금 수령시기를 설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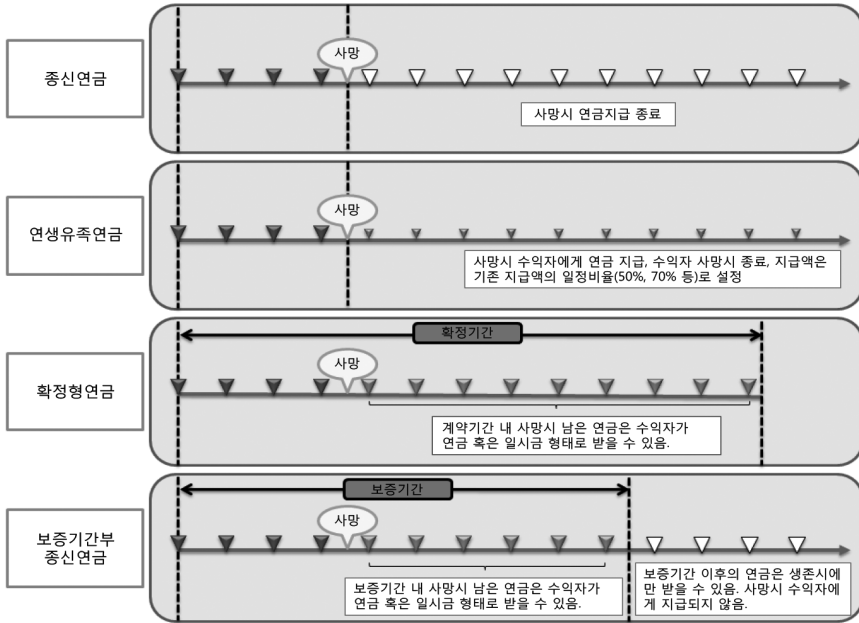
〈그림 IV-2〉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옵션



다음으로 지급기간 설정에 따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 보증기간을 설정할지, 수익자를 지정할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에 따라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도 있다.

연생유족연금(joint and survival annuity)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수익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지급규모는 원 지급액의 일정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life annuity certain)의 경우 계약기간 내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은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부종신연금(whole life with guaranteed period)의 경우는 보증기간 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잔여기간 내 연금을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기간 이후의 연금은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생존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그림 IV-3〉 지급기간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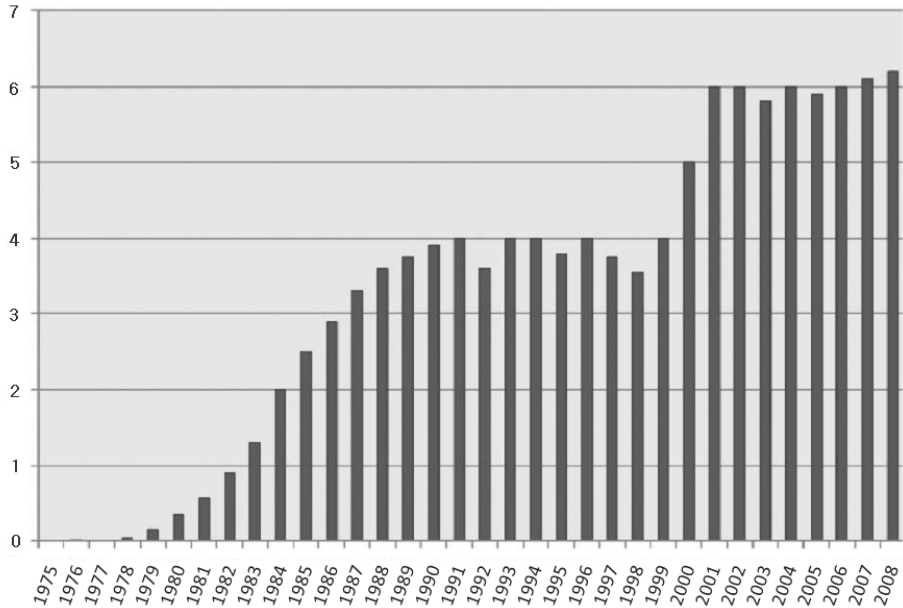


## 2)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 시장규모

1976년 약 500만 달러, 1979년 3,000건 미만이던 시장 규모는 1983년에 15억 달러(15,000건)를 넘어섰고, 1990년대 초반 약 40억 달러로 성장하여, 2008년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되고 있다.

〈그림 IV-4〉 미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연금 판매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Jeremy Babener(2010), p. 19.

미국구조화지급거래협회(NSSTA: National Structured Settlement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2004년까지 50만 명에게 4,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6)</sup>

ISO 조사<sup>17)</sup>에 따르면, 전체 인적상해배상청구건의 12%가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30만 달러가 넘는 청구건의 경우 약 25%가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sup>18)</sup> 지급규모도 매우 다양한데 구조화지급방식을 이용하는 청구건의 2/3 이상이 중증상해(major injuries)를 포함하고 총 평균지급금액은 408,000달러였다. 나머지 1/3의 총 평균지급금액은 21만 달러였다. 이러한 구조

16) Jeremy Babener(2010), p. 20; Daniel W. Hendert et al.(2009),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 Payment Judgement" 재인용.

17) 1997년 약 1,750건 이상의 인적사고배상책임청구건을 대상으로 함.

18) NSSTA 조사에 따르면 75,000달러~100,000달러 청구건의 7%, 1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 30%이다. Jeremy Babener(2010), p. 20.

화지급방식은 10,000달러 또는 20,000달러 등 소규모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sup>19)</sup> 실제 5,000달러나 2,700달러와 같은 작은 규모도 보고된 바 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무렵에는 약 430명의 전업 브로커가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24개가 넘는 회사가 구조화지급방식과 관련된 연금을 판매하였다.<sup>20)</sup>

## 2. 영국

### 가. 도입배경

영국에서 손해배상금제도의 다양화는 1970년대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1990년대에 관련한 법제가 정비되고 2005년에 법원의 정기금지급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의 정기금지급 관련법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1989년의 7월 14일의 Kelly v. Dawes의 사건이었다. 동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액 일시금이 아닌 일부 일시금과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 면세(tax free)인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건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기금에 대해 다소 모호한 1936년의 세금판례(Dott v. Brown)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1995년에 재무법(Financial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적사고 손해배상금의 정기금 수요와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up>21)</sup>

19) Jeremy Babener(2010), p. 9; Leo Andrada(2000), "Structured Settlements: The Assignability Problem" 재인용.

20) Jeremy Babener(2010), p. 8; Richard B. Risk(2001), "Structured Settlements: The Ongoing Evolution From a Liability Insurer's Ploy to an Injury Victim's Boon", Tulsa Law Journal, Vol.36, Issue 4, pp. 856~901 재인용.

21) Richard Cropper(2005), "Periodical Payment, Structured Settlements and Conventional Lump Sums", p. 2.

## 나. 관련법제

### 1) Finance Act 1995

동 법 Sec.142에 따르면 정기금방식의 손해배상금이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 법은 적용대상 인적사고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과 질병(any disease and any impairment of a person'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기금 손해배상금이 소득세의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적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적격한 합의(qualifying agreement)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합의서(또는 명령문)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가해자(혹은 그들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그들의 보험회사)는 하나 이상의 연금을 피해자에게 구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금을 수령할 자 또는 연금수령을 대신 받을 사람만 면세의 대상이 된다.

정기금의 지급은 피해자의 일생에 걸쳐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을 선택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의 지급규모와 시기는 균등한 비율 또는 간격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급여의 인상 규모 혹은 비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 2) Damages Act 1996

동 법은 인적사고에 대한 정기금 등 구조화지급방식을 채택한 피해자의 연금수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된 법이다. 즉, 손해배상액으로 연금보험을 구입한 경우에 연금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한 법이다. 동 법의 적용대상 인적사고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법원의

정기금지급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동 법에 의하면 2000년 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의거 운용되는 금융서비스보장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구조화연금(Structured Settlement Annuity)에 대해 총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해 준다.

아울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화지급방식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무보험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는 자동차보험자협회(Motor Insurers' Bureau) 또는 국내규제보험회사(Domestic Regulations Insurer)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다. 운영현황

인적사고의 정기금제도에서 연금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 중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료지식이 있어야 언더라이팅을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이 매우 소규모라는 점에서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구조화지급방식은 폭넓게 쓰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의료과실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2000년 기준으로 대략 연간 200건 정도의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지며 평균 규모가 약 50만 파운드에서 75만 파운드이므로 현재 전체 시장 규모는 연간 1억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한편,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배상책임규모가 20만 파운드 이상인 배상이 연간 1,500건에서 2,500건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약 6%에서 8% 가량이 구조화지급방식에 의해 배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약 5억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sup>23)</sup>

인적사고의 정기금제도와 관련한 연금상품의 판매채널은 독립재무설계사(IFA)

22)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6.

23)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7.

가 주도하고 있다. IFA는 당사자에게 복잡한 법적사항과 세무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컨설팅비(professional fees)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정기금지급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비용, 자문료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정기금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o win, no fee). 수수료(commission)는 생명보험회사가 지불하며 수수료율은 일정하지 않고 연금구매가격의 2% 내외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인적상해 시 정기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구조화지급방식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기금지급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서 법원은 미래손실을 포함하는 인적상해사건의 경우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러한 명령은 양측의 입장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다.

### 3. 호주

#### 가. 도입배경

호주에서의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활용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1990년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5년 보건부는 구조화지급방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996년과 1997년에 세계개정안이 뉴사우스웨일즈(NSW), 빅토리아 2개 주에서 제시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의 자동차사고당국(NSW Motor Accident Authority)은 1998년에 연방 및 주 기금에 세계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2001년에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세계혜택이 가능해졌다.

## 나. 관련법제

호주의 구조화지급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구조화지급방식에 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법은 2001년도에 마련되었다. 동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는 54장(Division 54 - Exemption for certain payments made under structured settlements and structured order, 2002)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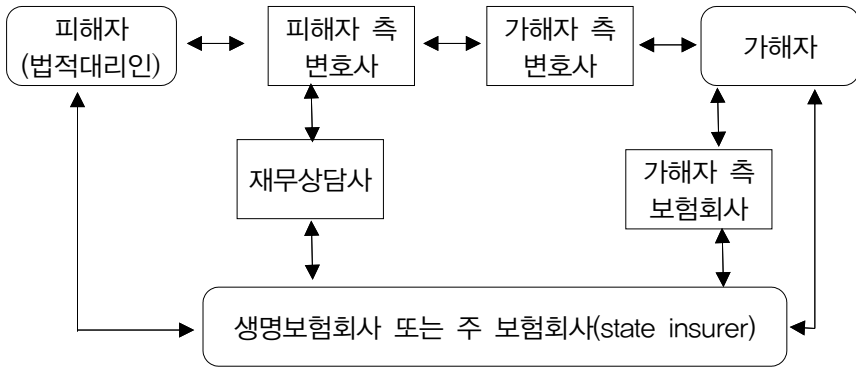
### 1) 구조화지급방식의 운영 방식

동 법에서는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구조화지급명령(structured order)을 정의하고 있다.

구조화지급방식은 개인의 인적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적사고는 의료과실, 운동사고, 자동차사고, 공공기관배상책임(public liability),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등이 있다. 단, 산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수탁자(trustee), 변호인), 피고(보상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의 보험자가 된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기금배상이 이루어지면 변경하거나 일시금형태로 현금화할 수 없다.

구조화지급명령(structured order)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법원 명령에 의해 정기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구조화지급방식과 유사하고 손해배상은 비과세 정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IV-5〉 호주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content/34770.htm>).

### 3) 비과세조건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소득세 비과세대상 보험상품은 인적사고보상연금, 인적사고보상일시금이다.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 정기금의 규모는 소비자물가지수, 성인의 주간 풀타임 평균임금 등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인적사고의 연금급여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연금이 피해자의 일생 또는 적어도 십년 이상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보증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보증기간 동안의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때 유산으로 지급되거나 유족이 수익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유산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일시금만 가능하다.

연금증권에는 연금 개시일, 종료일, 매 정기금 규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이 죽은 후 수익자에게 남은 연금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자의 이름을 기명하고, 수익자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일시금의 경우, 피해자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리인에 의해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때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금급여나 구조화지급방식에 포함된 일시금의 경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연금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일생 동안 적어도 월 1회 지급되어야 하고 그 규모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수준이란 기초노령연금(basic age pension) 이상을 의미한다.<sup>24)</sup>

#### 다. 운영현황<sup>25)</sup>

호주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54장이 발효되고 난 뒤 오직 한 건의 구조화지급방식만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인적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예치하고 분할하여 지급(allocated pension) 받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퇴직연금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하고 급여의 규모와 시기에 관해 유연한 지급 옵션을 제공하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방식(실적배당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일시금 인출을 포함하여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일시금으로의 완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피해자인 배상청구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연금상품이 다른 투자옵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법 개혁으로 인하여 적용할인율이 높아져 구조화지급방식이 일시금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20년간 매주 \$6,000의 치료비용을 지급하

24) 2011. 9. 20 기준, Age Pension 요율(single 기준)은 총 \$784.80(base: \$689.00, supplement: \$59.80).

25) Alan Cameron(2007), "Review of the income tax exemption for structured settlement", pp. 17~23.

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4,578,882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20년간 매주 지급되는 \$6,000에 대하여 3%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4,727,400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3,998,400의 일시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구조화지급방식하에서 연금을 구입하여 주는 것보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셋째, 생명보험회사들은 배상청구인에게 매력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물가연동 종신연금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종신연금 지급기간은 표준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짧다. 따라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표준적인 종신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들 리스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책정과 규모 예측이 어렵다. 그 결과 다시 손해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적합한 상품이 부재하여 구조화지급방식을 많이 활용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주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정기금지급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호주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4장의 규정에 맞는 구조화지급방식이 퇴직연금에 비해 배상청구인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금관련 제도와 상품이 발달한 호주의 예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호주의 예를 참고하여 배상청구인의 니즈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한 정기금 지급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 V.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

---

### 1. 정기금지급 선호도 조사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일시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60.9%,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39.1%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이미 정기금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2007년 시행한 AIG Survey Report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V-1〉 일시금 vs. 정기금의 선호 비율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일시금	659	60.9
정기금	423	39.1
계	1,082	100.0

이 Report에 따르면, 미국인 1,000명(80%는 인적사고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20%는 인적사고 당사자 이거나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를 둔 가장이 본인의 운전사고로 장해를 입게 된 경우<sup>26)</sup> 정기금의 활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65%의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하고, 35%가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sup>27)</sup>

---

26) 당신은 35세이고,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차량은 SUV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다. SUV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당신은 큰 상해를 입었다.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생명을 구했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몇 달간의 재활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고, 재활치료를 통해 언젠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몇 년 후에 법원은 SUV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고, 당신에게 7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서 당신은 보상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재정적 의사결정과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49%),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점(26%), 연금에 종속되지 않고, 융통성이 있음(16%), 재무적 독립성을 보장(6%), 정부의 보조로 생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2%), 기타사유(1%) 순이었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용도(43.2%)와 목돈마련(28.8%)이 일시금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V-2〉 일시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단위: %)

선호 이유	목돈마련	수령불편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투자용도
응답자 수 비율	28.8	9.9	18.1	43.2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을 일시금 선호 응답자 중 약 18%가 선택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불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는 의무가입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

27) 일시금과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한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한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기금을 선호하는 이유로 74%가 생계비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자녀교육비 마련(14.2%), 가족의 불화 우려(7.8%), 갈취 및 탕진의 우려(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경우 정기금 선호 이유가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마련인 것을 보더라도 정기금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V-3〉 정기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단위: %)

선호 이유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족불화	갈취, 탕진 우려
응답자 수 비율	74.0	14.2	7.8	4.0

다음으로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표 V-4〉 연령대별 정기금 선호 비율

(단위: 명, %)

연령대	응답자 수		
	일시금	정기금	정기금 선호 비율
20대	134	74	36
30대	156	77	33
40대	154	85	36
50대	215	187	47

주: Chi-Square 독립성 검정 p-value = 0.002

물론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결혼여부와 학력이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요소

(〈표 V-5〉 참조)이므로 정기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연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타 성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5〉 연령별·결혼여부별·학력별 정기금 선호 비율 (단위: 명, %)

구분			일시금	정기금	정기금 선호 비율
연령	결혼 여부	학력			
20대	미혼	고졸	42	23	35
		대졸 이상	78	37	32
	기혼	대졸 이상	8	11	58
30대	미혼	고졸	14	6	30
		대졸 이상	24	11	31
	기혼	고졸	48	20	29
		대졸 이상	70	39	36
40대	기혼	고졸	82	48	37
		대졸 이상	67	32	32
50대	기혼	중졸	24	22	48
		고졸	146	134	48
		대졸 이상	43	30	41

2007년 시행한 AIG Survey Report의 인적사고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6%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했고, 정기금은 7%만 선택했으며, 나머지 7%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합하여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선택한 자들의 57%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소진했고, 기타는 일부만 남아있다고 응답했다(일시금 선택자의 12%는 손해배상금의 75% 이상, 10%는 25% 미만, 9%는 25~50%, 7%는 50~75% 남아있다고 답함. 5%는 답변하지 않음).

다음은 가계소득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고<sup>28)</sup>, 손해배상금을 일시금

과 정기금 중 어느 것으로 받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앞선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27%의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하고, 73%는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71%가 정기적인 소득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을, 19%는 재무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응답했다. 기타로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5%), 자신 또는 가족의 재정적 의사결정과 계획을 믿지 못한다(3%), 정부의 보조로 생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기금의 활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2. 정기금 운영방식

정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연금의 운용은 상당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운영비용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 생각되어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

28) 당신은 최근에 결혼한 22살 여성이다. 당신의 배우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당신은 첫 번째 아기를 석 달 후에 출산할 예정이다. 당신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신 배우자의 직업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다. 당신 배우자는 비오는 날 발을 잘못 디더 15층 건물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회사는 이미지 손상을 염려하여 소송 대신 당신에게 250만 달러의 settlement를 제안했다. 향후 몇 개월간 소송으로 피곤한 절차를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당신의 변호사는 settlement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 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집수수료 등의 부담이 없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손해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지급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와 운영자인 손해보험회사에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즉,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of 1982)이나 영국의 재무법(Finance Act 1995, Sec.142)에서처럼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일시금 또는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급방법이나 적용이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나 보험금지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 공청회를 통한 약관 또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보험금지급에 따른 금리위험의 가능성, 보상업무의 증가 등 배상책임의 장기화가 손해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나.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연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할 수 있고, 자사의 상품을 이용하므로 모집수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세계적격 연금만을 취급할 수 있어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기금의 수탁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손해보험회사가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는 예금자보호법의 특례로 영국의 경우처럼 책임준비금의 90%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나 타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해서 제공해야 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여러 단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정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급조건을 설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금운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배상책임을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의 문제이지 가해자 즉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형식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처럼 가해자 즉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 또는 기타 수탁회사에게 배상의무를 전가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주(state) 보증기금이 주의거주자를 보호하지 않아 보험금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등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불어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한 경험을 가진 미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작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배상의무를 전가하는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변호사제도나 중개인제도가 발전하지 않아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방법은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탁사(assignee)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로는 예금자보호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나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마승렬(2010)은 확정기간형 즉시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업비율을 추정한 바 있는데, 만기 10년의 경우 5.37~7.7%, 만기 15년의 경우 5.52~9.02%, 만기 20년인 경우 5.82~9.08%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의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인적사고 배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나 피해자가 5% 이상의 사업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3. 관련법규 검토

#### 가. 정기금지급 근거법

##### 1) 합의의 경우

심각한 인적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그들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구조화지급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일시금지급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금지급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⑦)에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현재 제도에서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약관의 “별도로 정한 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구체화하여 약관에 첨가하거나 보험업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의 준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약관에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함과 그 지급방법 및 적용금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 2) 법에 의한 강제의 경우

정기금지급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성년 유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유가족의 부양이라는 보상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정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기금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정기금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손해발생시기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가 불법행위사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금의 법리적 논의는 손해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확정된 손해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이라는 논리에서의 정기금지급은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적다.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발생시기를 불법행위시로 일관하여 손해액을 확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 손해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정기금을 강제(structured order)할 수 있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약관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약관의 경우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약관을 개정하여 정기금을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 유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4편 보험편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규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나. 세제혜택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정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또는 주요국의 경우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금 운영방식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정기금을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만 수급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과세의 명분이 된다. 즉, 피해자는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것일 뿐이므로 이자소득 등이 과세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미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기금지급기관에 대한 과세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이들 국가의 경우 운용기관과 정기금 수령자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준비금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이 되므로 별도의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등을 이용하여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표 V-6〉 보험관련 세제

관련 세제	주요 내용	근거법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보험료 수입에 대한 교육세	보험료수입 등의 0.5%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 다. 적용이율

정기금 지급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적용이율에 관한 것이다. 단일이율을 사용할 것인지 변동이율을 사용할 것인지, 이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율적용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실수익을 일시금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은 라이프니츠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기금의 가치를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는 호프만식이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 라이프니츠식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호프만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정기금지급에 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할 것인지 호프만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이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VI. 결론

---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일시금지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더욱이 자동차보험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서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현재 제도에서도 보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약관의 “별도로 정한 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별도로 정한 바”를 구체화하여 약관에 첨가하거나 보험업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의 준사회보험성격의 보험약관에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함과 그 지급방법 및 적용금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성년 유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등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정기금지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정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사고유자녀의 수를 추정해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6,6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정기금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 김해식(2009. 3),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마승렬(2002), 「손해배상액의 정기금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6호.
- \_\_\_\_\_ (2010. 8), 「상실수익액의 연금형태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3권(2).
- 보험개발원(2011),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 보험연구원(2011),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연도.
- 송홍섭(1992. 8),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 『민사판례연구』 X IV.
- 신윤정 · 김지연(2010. 12),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재중(1996), 「중증장애자의 정기금배상 문제」, 『손해보험』 제338호.
- 최은순(2008),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31권.
-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 Alan Cameron(2007), “Review of the income tax exemption for structured settle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Australia).
- Anthony H. Riccardi & Thomas R. Ireland(Winter 2002-2003), “A Primer on Annuity Contracts, Structured Settlements: Periodic Payment Judgement”, *Journal of Legal Economics*.
- Colm McCarthy(2010. 7), “Economic Aspects of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in Ireland”, University of College Dublin.
- Daniel W. Hindert et al.(2009),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 Payment

Judgement”, *Law Journal Press*.

Jeremy Babener(2010),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 History”,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13(1).

\_\_\_\_\_ (2010),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6.

Structured Settlements Working Party(2000. 10), General Insurance Convention 2000.

Lawrence M. Spizman(Winter 2000),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ort reform: Rent Seeking in New York State's Structural Settlements Statute,” *Journal of Forensic Economic*, Vol.13(1).

Leo Andrada(2000), “Structured Settlements: The Assignability Problem”.

Richard Cropper(2005. 3), “Periodical Payments, Structured Settlements and Conventional lump Sums”, *Personal Financial Planning Limited*.

Richard B. Risk(2001), “Structured Settlements: The Ongoing Evolution From a Liability Insurer's Ploy to an Injury Victim's Boon”, *Tulsa Law Journal*, Vol.36(4).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

# 부 록 I : 인적사고 의무보험제도 현황

(’08.1월 현재 30종)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운행으 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국토 해양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벌금)	’63.4.4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 법§5	원자력사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교육과학 기술부	—	’69.1.24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7, 시행규칙§2 및 §3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 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	항공운항 중 발생하는 기체손실, 승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 승무원 및 승객의 신체상해	국토 해양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벌금)	’71.1.12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로인한재해 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5	특수건물 소유자	화재로 인한 신체 손해	기획 재정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73.2.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등 8개 법률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전문인 업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문화체육 관광부 등	—	’84.4.1
수렵보험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13⑦, 령§12의3	수렵장 안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	수렵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농림수산 식품부	—	’84.7.1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43①,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25·규칙§53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 법§33	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시설 사용자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지식 경제부	·도시가스: 3,000만 원 이하(과태료)	’84.7.1
					·고압가스: 2,000만 원 이하(과태료)	’84.7.1
					·액화가스: 300만 원 이하(과태료)	’07.4.11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선원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선원법§98, 령§32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근로자 재해 및 배상책임	노동부	500만 원 이하 (벌금)	'84.9.7
설계/감리 보상보험	건설기술관리법§2 1④, §22의3, §33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전문회사	설계/감리자의 제3자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88.1.1
화물배상 책임보험	화물유통촉진법§8 및 령§11(별표1)	복합운송 주선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92.6.15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14, 령§7	200톤이상 유류운송 선박소유자	유류 배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93.1.1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도선도선사업법 §33, 령§27	유도선사업자 (해운법 적용대상자 제외)	유도선 사업 관련 법률상 배상책임	행정 안전부	-	'94.1.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설치 및이용에관한법률 §29, 규칙§31	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내 배상책임	문화체육 관광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94.2.7
건설공사 /조립보험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53	각중앙관서의장, 계약담당공무 원, 계약대상자	공사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기획 재정부	-	'97.1.1
승강기 보수업자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제조및관리 에관한법률 §11의3	승강기보수업자	승강기보수업무 관련 배상책임	지식 경제부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97.6.30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sup>1)</sup>	사회복지사업법§3 4의2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보건복지 가족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벌금)	'03.1.13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기본법§33	수련시설설치· 운영자	수련시설내 신체 상해	문화체육 관광부	-	'05.2.9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28, 령§19	수상레저사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재물손해 등	국토 해양부	50만 원 이하 (과태료)	'06.3.31
운전학원 종합보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5의3 9호	운전학원 운영자	재물손해,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경찰청	-	'06.6.1
학원배상 책임보험 <sup>1)</sup>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의교습에 관한법률§4	학원 설립·운영자	수강생의 신체손해	교육과학 기술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06.9.24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법률 §14	연구기관의 장	연구활동 중 상해사고	교육과학 기술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06.4.1 (’07.8)
어선원 재해보험 <sup>3)</sup>	어선원및어선재 해보장보험법§16	어선 소유자	어선원의 신체손해	국토 해양부	-	'04.1.1

주: 1) 별도로 개발된 상품은 없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가입.

2) 가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어선재해보험: 임의보험, 기타 정책성보험: 의무보험.

3)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며, 어선원재해보험은 의무보험이나 어선재해보험은 임의보험.

4) 소관부명은 2008년 기준임.

5) 가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10. 1. 1 근거법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됨.

자료: 금융감독원(2008. 1).

## 부 록 Ⅱ: 사고유자녀 수 추정을 위한 자료

〈부록 표 Ⅱ-1〉 1992~2009년 각 연도의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14세 이하	15~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불명	합계
1992	1,180	794	2,117	2,219	1,640	1,576	2,053	61	11,640
1993	998	650	1,924	2,017	1,470	1,424	1,851	68	10,402
1994	890	656	1,942	1,996	1,394	1,415	1,748	46	10,087
1995	809	805	2,099	1,916	1,443	1,388	1,806	57	10,323
1996	932	941	2,572	2,537	1,832	1,599	2,187	58	12,658
1997	753	988	2,265	2,158	1,675	1,537	2,175	52	11,603
1998	592	696	1,638	1,608	1,304	1,286	1,888	55	9,067
1999	572	664	1,500	1,675	1,523	1,311	2,066	42	9,353
2000	589	722	1,637	1,704	1,671	1,432	2,455	26	10,236
2001	489	547	1,165	1,371	1,305	1,154	2,043	23	8,097
2002	468	399	1,002	1,111	1,186	979	2,064	13	7,222
2003	394	412	921	1,096	1,172	1,013	2,168	36	7,212
2004	296	314	797	849	1,214	873	2,183	37	6,563
2005	284	273	735	871	1,147	909	2,151	6	6,376
2006	276	289	701	808	1,144	970	2,136	3	6,327
2007	202	312	738	734	1,083	968	2,128	1	6,166
2008	161	259	729	657	1,032	918	2,074		5,834
2009	154	269	689	624	958	948	2,195	1	5,838

자료: 도로교통공단.

※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성별 연령별 사망자 수  
-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보상통계 연감 참조

〈부록 표 II-2〉 1997~2009년 각 연도의 모(母)의 연령별 신생아 수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7	3.0	54.2	159.7	71.5	15.4	2.3	0.2
1998	2.8	48.3	152.1	71.2	15.2	2.3	0.2
1999	2.6	43.3	147.2	72.3	15.3	2.4	0.2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자료: 통계청.

〈부록 표 II-3〉 1992~2009년 각 연도의 성별 평균 초혼연령 자료

연도	여성	남성	차이
1992	24.9	28.0	3.1
1993	25.0	28.1	3.1
1994	25.1	28.2	3.1
1995	25.3	28.4	3.0
1996	25.4	28.4	3.0
1997	25.7	28.6	2.9
1998	26.0	28.8	2.8
1999	26.3	29.1	2.8
2000	26.5	29.3	2.8
2001	26.8	29.5	2.8
2002	27.0	29.8	2.8
2003	27.3	30.1	2.9
2004	27.5	30.5	3.0
2005	27.7	30.9	3.2
2006	27.8	31.0	3.2
2007	28.1	31.1	3.0
2008	28.3	31.4	3.1
2009	28.7	31.6	2.9

자료: 통계청.

〈부록 표 II-4〉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중증후유장해자  
(장해등급 1~5급) 수

(단위: 명)

연도	자동차보험금 보상자 중		
	사망자 수(A)	중증후유장해자 수(B)	B/A
1997	6,421	931	0.14
1998	5,249	877	0.17
1999	5,481	663	0.12
2000	5,941	785	0.13
2001	5,155	832	0.16
2002	4,774	745	0.16
2003	4,509	694	0.15
2004	3,944	666	0.17
2005	4,047	671	0.17
2006	3,995	659	0.16
2007	3,931	645	0.16
2008	3,822	619	0.16
2009	3,854	579	0.15
합계	61,123	9,366	0.15

자료: 보험개발원.

---

## 부 록 Ⅲ: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 1.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내용

♣ 다음은 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 만약 ○○님께서 상당한 액수의 보험 보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님께서 어떤 형태의 보험금 지급을 선호하십니까?

- ① 일시금 보상 ☞ 문2-1번으로      ② 정기금 보상 ☞ 문2-2번으로

문2-1.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일시금 보상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목돈이 필요해서  
② 정기금 수령이 불편해서  
③ 장기간 정기금지급을 믿을 수 없어서(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  
④ 일시금을 받아 투자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2-2. (문1에서 ②번 응답자만) 정기금 보상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가족(혹은 사망 시에는 유족)의 생계유지비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② 일시금 수령 시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③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④ 본인 사망 시 타인에 의한 갈취, 탕진이 우려되어서

문3.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나 사망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어떠한 형태를 희망하십니까? 보상금 규모에 따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선호형태 보상금 규모	일시금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정기금)	일시금과 정기금을 섞어서
1) 1억	①	②	③
2) 3억	①	②	③
3) 5억	①	②	③
4) 5억 이상	①	②	③

문4. ○○님께서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 시 보험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가. 정기금과 일시금의 선호도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결혼여부와 학력이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요소이므로 정기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성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록 표 Ⅲ-1〉 일시금 vs 정기금

(단위: 명, %)

구분		일시금		정기금	
전체		659	60.9	423	39.1
연령별	20대	134	64.4	74	35.6
	30대	156	67.0	77	33.0
	40대	154	64.4	85	35.6
	50대	215	53.5	187	46.5
성별	남	333	62.5	200	37.5
	여	326	59.4	223	40.6
결혼 여부	기혼	495	59.4	339	40.6
	미혼	164	66.1	84	33.9
세대주 여부	세대주	281	59.3	193	40.7
	비세대주	378	62.2	230	37.8
가족구성원 수	1명	37	60.7	24	39.3
	2명	53	61.6	33	38.4
	3명	124	59.9	83	40.1
	4명	368	60.5	240	39.5
	5명	67	67.0	33	33.0
	6명 이상	10	50.0	10	50.0
자녀 수	0명	203	64.0	114	36.0
	1명	100	61.0	64	39.0
	2명	305	58.4	217	41.6
	3명	44	65.7	23	34.3
	4명	6	54.5	5	45.5
	5명 이상	1	100.0	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314	60.9	202	39.1
	중소도시	284	61.2	180	38.8
	군 단위	61	59.8	41	40.2
학력	중졸 이하	26	52.0	24	48.0
	고졸	340	58.9	237	41.1
	대졸 이상	293	64.4	162	35.6

## 나. 일시금 선호이유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투자용도, 목돈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정기금 수령의 불편함 순임.

〈부록 표-2〉 일시금 선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목돈마련	수령불편	신뢰부족	투자용도	
전체	659	28.8	9.9	18.1	43.2	
연령별	20대	134	23.9	9.7	18.7	47.8
	30대	156	29.5	10.9	12.2	47.4
	40대	154	31.2	5.8	17.5	45.5
	50대	215	29.8	12.1	22.3	35.8
성별	남	333	26.4	10.5	18.0	45.0
	여	326	31.3	9.2	18.1	41.4
결혼 여부	기혼	495	29.9	10.3	19.0	40.8
	미혼	164	25.6	8.5	15.2	50.6
세대주 여부	세대주	281	28.1	9.6	18.1	44.1
	비세대주	378	29.4	10.1	18.0	42.6
가족구성원 수	1명	37	29.7	2.7	13.5	54.1
	2명	53	22.6	7.5	24.5	45.3
	3명	124	33.9	12.9	13.7	39.5
	4명	368	28.3	11.1	19.3	41.3
	5명	67	0.0	0.0	0.0	0.0
	6명 이상	10	0.0	0.0	0.0	0.0
자녀 수	0명	203	25.6	7.9	18.2	48.3
	1명	100	34.0	13.0	14.0	39.0
	2명	305	29.2	11.5	20.0	39.3
	3명	44	31.8	2.3	15.9	50.0
	4명	6	16.7	0.0	0.0	83.3
	5명 이상	1	0.0	0.0	0.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314	28.7	11.1	19.1	41.1
	중소도시	284	29.9	8.5	18.3	43.3
	군 단위	61	24.6	9.8	11.5	54.1
학력	중졸 이하	26	30.8	26.9	19.2	23.1
	고졸	340	27.6	8.8	21.8	41.8
	대졸 이상	293	30.0	9.6	13.7	46.8

## 다. 정기금 선호이유

정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족의 불화, 갈취 및 탕진의 우려 순임.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비 때문에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이 커짐.

〈부록 표-3〉 정기금 선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생계비	가족불화	자녀 교육비	갈취, 탕진 우려	
전체	423	74.0	7.8	14.2	4.0	
연령별	20대	74	73.0	6.8	17.6	2.7
	30대	77	66.2	7.8	20.8	5.2
	40대	85	70.6	5.9	21.2	2.4
	50대	187	79.1	9.1	7.0	4.8
성별	남	200	76.0	6.5	13.5	4.0
	여	223	72.2	9.0	14.8	4.0
결혼 여부	기혼	339	73.5	8.3	14.5	3.8
	미혼	84	76.2	6.0	13.1	4.8
세대주 여부	세대주	193	77.2	7.3	10.4	5.2
	비세대주	230	71.3	8.3	17.4	3.0
가족구성원 수	1명	24	79.2	4.2	0.0	16.7
	2명	33	84.8	6.1	3.0	6.1
	3명	83	78.3	6.0	10.8	4.8
	4명	240	70.8	8.8	18.3	2.1
	5명	33	69.7	12.1	12.1	6.1
	6명 이상	10	80.0	0.0	20.0	0.0
자녀 수	0명	114	76.3	6.1	11.4	6.1
	1명	64	81.3	3.1	10.9	4.7
	2명	217	69.6	9.7	17.5	3.2
	3명	23	78.3	13.0	8.7	0.0
	4명	5	100.0	0.0	0.0	0.0
	5명 이상	0	0.0	0.0	0.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202	80.2	4.5	12.4	3.0
	중소도시	180	70.0	12.2	12.8	5.0
	군 단위	41	61.0	4.9	29.3	4.9
학력	중졸 이하	24	83.3	4.2	4.2	8.3
	고졸	237	73.0	8.9	13.9	4.2
	대졸 이상	162	74.1	6.8	16.0	3.1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 영문발간물

---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 CEO Report

---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자약력

### 조재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 이기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정책실 실장)  
(E-mail : kihlee@kiri.or.kr)

### 정인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essence4u@kiri.or.kr)

정책보고서 2012-1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 및 인쇄	KM 고려문화사

---

ISBN 978-89-5710-145-2

정가 10,000원